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세출예산 배정
비율 명시 등〉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2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세출예산 배정 비율 명시 등(안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	3
2.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방정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신설(안 제85조) ..	10
3.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의 국회 보고(안 제95조)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의자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

다. 회 부 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하고, 매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특별계정 등으로의 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 지역지원계정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의 배정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균형 발전 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세출예산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의 배정을 명시하고, 예산 배분 기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전용·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지

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회계의 운용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78조제1항제1호 개정, 제79조제1항제1호 개정, 제85조 제1항 개정, 제95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세출예산 배정 비율 명시 등 (안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

현 행	개 정 안
○ 회계의 관리·운용 -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함 <신 설> -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회계의 관리·운용 - (현행과 같음) - <u>지역자율계정에는 세출예산의 70%를, 지역지원계정에는 세출예산의 30%를 각각 배정함</u> - (현행과 같음)
○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의 세입 - 지역자율계정의 세입: 1. 주세의 <u>40%</u> 2. ~ 12. (생략) - 지역지원계정의 세입: 1. 주세의 <u>60%</u> 2. ~ 11. (생략)	○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의 세입 - 지역자율계정의 세입: 1. 주세의 <u>60%</u> 2. ~ 12. (생략) - 지역지원계정의 세입: 1. 주세의 <u>40%</u> 2. ~ 11. (생략)

현행법 제76조¹⁾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현행법 제78조²⁾에 따라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자율사업에 대해 보조하고 있는 반면, 지역지원계정의 경우 현행법 제 79조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지역 진흥에

-
-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4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현행법 제75조⁴⁾는 이러한 계정별로 세출예산의 배정이나 자금 운영,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⁵⁾에서는 세출예산의 계정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은 채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계정별 세출예산의 배정은 사실상 기획예산처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계정별 세출예산의 배정 현황에 따르면,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는 2025년의 경우 3.5조원으로 세출예산 전체의 약 23.2%가 배정된 반면, 2026년의 경우 그 규모는 10조원으로 전체의 43.3%가 배정되었음. 지역지원계정의 경우 2025년 규모는 10.8조원으로 전체의 약 71.5%가 배정된 반면, 2026년 규모는 11.9조원으로 전체의 51.5%가 배정되는 등 세출예산의 계정별 배정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임.

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5조(회계의 관리·운영)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영한다.
 -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지특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배정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계정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	108,535	117,433	136,650	147,439	229,111
지역자율계정	23,045	23,694	30,846	35,401	100,510
지역지원계정	82,070	90,391	102,319	108,263	122,240
제주계정	2,704	2,775	2,943	3,193	5,542
세종계정	716	573	541	582	821

자료: 기획예산처

개정안은 이와 같이 회계의 세출예산의 계정별 배정 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획예산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에 계정별 세출예산의 배정 비율을 명시하는 한편,

지역지원계정에 비해 지역자율계정에 보다 많은 세출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주세의 세입 배정 비율 역시 기존(지역자율계정 40%, 지역지원계정 60%)에 비해 지역자율계정의 비율을 확대(지역자율계정 60%, 지역지원계정 40%)함으로써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에 대한 보조 활성화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의 세입 금액 및 비중 현황]

(단위: 억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지역자율계정	23,045	23,694	30,846	35,401	100,510
○ 주세	14,950	12,860	14,304	12,837	12,580
○ 전입금	5,128	9,888	15,155	17,706	81,140
○ 기타수입	2,967	946	1,387	4,858	6,790
□ 지역지원계정	82,070	90,391	102,319	108,263	122,240
○ 주세	22,424	19,291	21,455	19,256	18,870
○ 전입금	58,492	66,180	75,968	80,988	96,158
○ 기타수입	1,154	4,920	4,896	8,019	7,212

자료: 기획예산처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특정 계정에 대한 세출예산 배정비율을 별도로 규정할 경우 예산편성의 경직성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또한, 주세 배분 비율 변경에 대하여, 현재 회계 수입 중 주세보다 타 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아⁶⁾ 배분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제고라는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정안은 계정별 세출예산의 배정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배정 비율이나 규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계정별 규모 내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나 효율적인

6) 2026년도 예산 기준 지역자율계정의 주세(40%) 1.3조원, 타 회계 전입금 8.1조원, 기타 0.6조원이며, 지역지원계정의 주세(60%) 1.9조원, 타 회계 전입금 9.3조원, 기타 0.7조원임.

재원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⁷⁾에 따라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을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⁸⁾에서는 각 계정별 재원 배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⁹⁾에서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기금 재원 총액의 25%, 75%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자율계정의 주세 배분 비율을 6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비중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 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세출예산의 배정 비율을 지역자율계정 70%, 지역지원계정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해당 계정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의 계정별 구체적인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논의를 통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방정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신설 (안 제85조)

현 행	개 정 안
○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u>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	○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년도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으로</u>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

현행법 제85조1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시·도 시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기획예산처는 지특회계의 시·도 지출한도 배분 시 재정수요(25%, 인구·면적)나 낙후도(75%, 지방소득세·노령인구비중·재

-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력지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상향(+10%p)하여 적용¹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함에 있어 전년도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총액을 의미하는 지표로,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를 특정 지역에 적용하는 개념임.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내총생산(GRDP, 명목)은 2,561조원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651조원), 서울특별시(575조원) 순으로 GRDP가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17조원), 제주특별자치도(27조원) 순으로 GRD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기준 지역별 GRDP(명목) 현황]

(단위: 조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561	575	121	75	126	55	56	94	1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51	65	92	151	67	104	135	151	2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11)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별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인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하여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출예산의 지역별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하여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지역내총생산 통계는 매년 연말에 전년도에 잠정치를 공표¹²⁾하는바,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상 개정안에 따른 ‘전년도’ 수치는 물리적으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2026년말에 2025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공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의 국회 보고 (안 제9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의 국회 보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전입금 및 용자금 운용 실적, 이월·전용·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집행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국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바탕으로 회계의 운용실태를 심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現 기획예산처장관)이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전입금 및 용자금 운용 실적, 이월·전용·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에 이를 바탕으로 회계의 운용실태를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재정법」¹³⁾에 따르면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13)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있음.

또한, 현행 「국가회계법」¹⁴⁾에 따르면 이러한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세입세출결산은 「국가회계법 시행령」¹⁵⁾에 따라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산보고서에는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이나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집행 결과 등이 세분화

14)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15)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 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불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 바. 세출예산 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불용액

되어 작성되지 않아 국가결산보고서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전입금 및 용자금 운용 실적이나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집행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전반적인 회계·기금에 대하여 일괄적인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만 별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과 국가결산보고서에 전체 회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집행 실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 ② (생 략) ③ <u>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76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70을, 제76조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30을 각각 배정한다.</u> ④ <u>세출예산의 자금운영·결산 및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u>40</u> 2.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 <u>60</u>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u>60</u> 2.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 <u>40</u> 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 ----- ----- -----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u> ② · ③ (생략) <u><신설></u>	-----<u>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년도 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 간</u>-----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95조(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의 국회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전용·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집행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u>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④ 국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바탕으로 회계의 운용실태를 심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u>

문 의 처
02)6788-5152